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2008. 7. 8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제·개정 일자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1999. 1. 21 법률제5667호 개정 2000. 1. 21 법률제6191호 2001. 1. 26 법률제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 26 법률제6380호 (인삼산업법) 2001. 1. 29 법률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2002. 1. 14 법률제6595호 2002. 12. 26 법률제6816호 2005. 8. 4 법률제7675호 2006. 9. 27 법률제7996호 (친환경농업육성법) 2006. 12. 28 법률제8103호 2008. 2. 29 법률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 6. 13 법률제9117호	제정 1999. 6. 30 대통령령제16444호 개정 2001. 3. 27 대통령령제1716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5. 29 대통령령제17230호 2001. 6. 22 대통령령제17242호 (인삼산업법시행령) 2001. 9. 1 대통령령제173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2002. 7. 13 대통령령제17674호 2003. 7. 29 대통령령제18071호 2006. 1. 16 대통령령제19279호 2007. 6. 26 대통령령제20103호 2007. 9. 10 대통령령제20257호 (대외무역법) 2007. 12. 6 대통령령제20431호 2008. 2. 29 대통령령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8. 7. 7 대통령령제20908호	제정 1999. 8. 9 농림부령제1339호 해양수산부령제129호 개정 1999. 12. 31 농림부령제1354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2001. 3. 28 해양수산부령제18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1. 6. 30 농림부령제1389호 해양수산부령제182호 2001. 7. 31 농림부령제1395호 (친환경농업법시행규칙) 2001. 10. 8 농림부령제1400호 2002. 7. 22 농림부령제1421호 2003. 9. 25 농림부령제1447호 2006. 1. 25 농림부령제1515호 2006. 6. 30 농림부령제1529호 2007. 6. 29 농림부령제156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령제12호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시행규칙) 2008. 7. 8 농림수산식품부령제20호

목 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7. 7 대통령령 제2090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제1조 목적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2조 농산물의 범위 1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1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3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3	
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5	제4조 삭제 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3	
	제6조 회의 4	
	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4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4	
	제9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5	
	제10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5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5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등		
제4조 표준규격화 6		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6
		제4조 표준규격의 시험의뢰 7
		제5조 표준규격의 고시 7
		제6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7
		제7조 삭제 8
제5조 품질인증 9	제12조 품질인증의 기준 9	제8조 품질인증의 신청 9
제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12	제13조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10	제9조 품질인증의 절차등 10
제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 14	제14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10	제10조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등 1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유효기간의 연장 12
		제12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등 12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4
		제1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도·감독 14
		제15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 14
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15	제14조의2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15	제15조의2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16
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18	제14조의3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16	제15조의3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17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14조의4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 .. 16	제15조의4 유효기간의 연장 18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18
		제15조의6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0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0
		제15조의8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2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23		제15조의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23
		제15조의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26
		제15조의1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26
		제15조의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27
		제15조의13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방법 등 28
		제15조의14 유효기간의 연장 28
제8조 지리적 표시의 등록 29	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29	제1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29
	제1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30	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등 30
	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30	제1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등 31
	제1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31	제1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등 32
	제19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37	제20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33
제9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34		
제10조 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36		
제11조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37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37	제20조 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37	제21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37
제13조 시료수거 등 39	제21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38	제2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39
제14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9	제22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39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41	제23조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41	제23조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개정 2001.10.8> 41
제15조의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 산지등 표시) 44	제24조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42	제2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43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47	제25조 원산지의 판정기준 43	제24조의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6
제17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49	제25조의2 원산지등 표시 대상 영업자 44	제24조의3 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 조사의 방법 등 50
제18조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50	제25조의3 원산지등의 표시 대상 45	제24조의 3(원산지등의 표시방법) 51
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52	제2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47	
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53	제27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47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p>	<p>제27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50 제27조의3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52</p>	<p>제24조의 4(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 거조사의 방법 51</p>
<p>제19조 농산물의 검사 54 제20조 검사원의 자격 56 제21조 검사증명서의 발급등 58 제22조 이의신청 등 58 제23조 검사판정의 실효 59 제24조 검사판정의 취소 59 제25조 보고 및 점검등 60 제26조 검사기관의 지정등 61 제27조 농산물의 검정 63 제28조 부정행위금지 등 65</p>	<p>제28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54 제29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56 제30조 보고 및 점검대상 등 60</p>	<p>제25조 농산물의 검사항목등 54 제26조 검사방법 54 제27조 검사신청절차등 54 제28조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56 제29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57 제30조 검사원의 자격관리 57 제31조 검사원의 교육 57 제32조 검사원의 증표 58 제33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58 제34조 이의신청 58 제35조 검사의 유효기간 59 제36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등 61 제37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62 제38조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62 제3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63 제40조 농산물의 검정절차 등<개정 2001.10.8> 63 제41조 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64 제42조 농산물의 검정항목 64 제43조 농산물의 검정방법 64 제43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65</p>
<p>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한 정보제공 65		제43조의3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66
제5장 보칙		
제29조 농산물의 명예감시원 67		제44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67
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68	제30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69	제4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68
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 68	제30조의3 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69	제44조의3 응시원서 및 수수료 72
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69	제30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71	제44조의4 자격증 교부 등 73
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74	제30조의5 시험위원 72	
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74	제30조의6 자격시험의 공고 등 72	
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75	제30조의7 합격자의 공고 등 73	제45조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76
제30조 포상금 75	제31조 포상금의 지급 75	
제31조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76		
제32조 수수료 77		제46조 수수료 77
제33조 청문 79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79	제32조 권한의 위임 79	
	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83	
제6장 벌칙		
제34조의2 벌칙 84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벌칙 84		
제36조 벌칙 85		
제37조 양벌규정 86		
제38조 과태료 87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87	제47조 삭제 79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農産物의 적정한 品質管理를 통하여 農産物의 商品性을 높이고 公正한 去來를 誘導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29></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標準規格"이라 함은 農産物의 包裝規格과 等級規格을 말한다. 4. "物流標準化"라 함은 農産物의 運送·보관·荷役·포장 등 物流의 각 段階에서 	<p>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2008.7.7></p> <p>제2조 (농산물의 범위 <개정 2001.9.1>)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 2006.1.16></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8, 2006.1.25></p> <p>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0.8, 2006.1.25, 2008.3.3, 2008.6.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01.10.8>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용되는 機器·容器·設備·情報 등을 規格化하여 互換性和 連繫性を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p> <p>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5. "地理的表示"라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名聲·品質 기타 特徵이 本質的으로 特定地域의 地理的 特性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 그 特定地域에서 生産된 特産物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6. "原産地"라 함은 農産物이 생산 또는</p>		<p>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p> <p>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p> <p>7. "遺傳子變形農産物"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遺傳子를 分離 또는 再組合하여 의도한 特性을 갖도록 한 農産物을 말한다.</p> <p>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p> <p>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p> <p>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p> <p>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p>	<p>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2007.6.26]</p> <p>제4조 삭제 <2001.9.1></p> <p>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 2001.9.1]</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p> <p>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p> <p>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p> <p>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p> <p>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p> <p>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p>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p> <p>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p> <p>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p> <p>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p>	<p>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9.1></p> <p>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9.1></p> <p>제7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9.1></p> <p>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9.1></p> <p>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p> <p>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⑥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6.12.28]</p> <p>제3조의2 (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 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 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 항 <p>[본조신설 2006.12.28]</p>	<p>제9조 (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 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 으로 본다. <개정 2001.9.1></p> <p>제10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 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 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 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01.9.1, 2008.2.29></p> <p>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 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1></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農産物の 規格・品質認證等 <개정 2001.1.29></p> <p>第4條 (標準規格化)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の 商品性の 提高, 流通能率의 향상 및 公정한 去來의 실현을 위하여 農産物의 標準規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에 맞는 農産物(이하 "標準規格品"이라 한다)을 出荷하는 者는 포장의 표면에 "標準規格品"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의 制定節次・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제3조 (표준규격의 제정) ①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8></p> <p>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p> <p>제4조 (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p> <p>제5조 (표준규격의 고시)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1.10.8></p> <p>제6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8.3.3></p> <p>②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포장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목2. 산지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4.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5. 등급6. 무게 또는 개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p>제7조 <삭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5條 (品質認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 다)의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6.9.27,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은 農産物(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기준·對象品目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2조 (품질인증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농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당해 농산물의 규격 또는 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 : 당해 농산물의 특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일 것 나. 가목외의 농산물의 경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중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일 것 3. 당해 농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를 	<p>제8조 (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품종확인서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갖추고 있을 것</p> <p>4. 당해 농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p> <p>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제13조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제14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p>	<p>제9조 (품질인증의 절차등)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심사담당자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③품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③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제10조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6條 (品質認證의 有效期間)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 1年으로 한다. 다만, 1年 이내에 그 品目の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品目の 特性상 有效期間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 표시사항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p>제11조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제12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p> <p>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7條 (品質認證機關의 지정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業人이 스스로 農産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自體品質管理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를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②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品質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質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p>		<p>한 때에는 그 사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 2007.6.29></p> <p>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도·감독)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이 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제15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2. 品質認證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p> <p>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제14조의2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①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p>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p> <p>2.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1.16]</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⑤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⑦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p>	<p>제14조의3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6]</p> <p>제14조의4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p>	<p>제15조의2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 <p>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6]</p>	<p>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④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3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p>		<p>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 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2와 같이 하되, 인증기준에 의한 별도의 인증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 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4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 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우수농산물인 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까지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우수농산물인 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p>		<p>차 등) ①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p>③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06.6.30></p> <p>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 <p>⑤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8.4]</p> <p>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p>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p>		<p>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6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p>③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개정 2006.6.30></p> <p>④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5.8.4]</p>		<p>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p>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8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3의6과 같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p>		<p>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법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⑦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5.8.4]</p>		<p>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p> <p>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p> <p>3.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p> <p>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⑧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요구할 것</p> <p>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⑪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3.3></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법 제7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산단계<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품목명나. 생산자 성명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p> <p>2. 유통단계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p> <p>3. 판매단계 가. 판매처 명칭 나. 판매처 소재지 다. 판매처 전화번호</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의13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방법 등) ①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의7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5조의14 (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5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8條 (地理的 表示의 登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地理的 特性을 가진 優秀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品質向上과 地域特化産業으로의 육성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制度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은 者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理的表示</p>	<p>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2. 삭제 <2002.7.13> 3.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p>12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6.1.25]</p> <p>제1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6. 자체품질기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8.2.29></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의 기준·對象品目·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p>	<p>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신설 2001.6.22, 2006.1.16></p> <p>제1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p> <p>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7.6.26></p> <p>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01.6.22, 2006.1.16></p> <p>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p> <p>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p>	<p>7. 품질관리계획서</p> <p>제17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등)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의 명칭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6></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6.26></p> <p>제1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p>	<p>제1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등)</p> <p>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p>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7.8></p> <p>③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8.7.8></p> <p>제1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등)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②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p> <p>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p> <p>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p> <p>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p> <p>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p> <p>③산립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p> <p>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p> <p>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p> <p>4. 취소사유</p> <p>제20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9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 		<p>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的 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②누구든지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p> <p>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 表示를 한 標準規格品에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하는 행위</p> <p>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 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p>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 地理的 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0條 (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標準規格品,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地理的の特産品の 品質水準의 유지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調査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2. 表示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3. 表示品의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거나 專門試驗研究機關 等에의 試驗依頼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때에는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第11條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依賴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表示品の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p>	<p>제19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第12條 (農産物의 安全性調査)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p>	<p>제20조 (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p>	<p>제21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재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공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資材등과 農産物에 대하여 殘留된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 및 抗生物質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有害物質이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의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습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 2. 生産·貯藏(生産者가 貯藏하는 경우에만)의 段階나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 <p>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농림수산물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의 對象地域·對象品目·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습으로 정한다.</p>	<p>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조사의 기본 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p>제21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저장창고 및 도매시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02.7.13></p> <p>②생산·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9.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p>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3條 (試料收去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農産物의 生産場所 또는 貯藏場所에 있는 農産物이나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게 하거나 당해 農産物을 生産·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때에는 農産物이나 資材 또는 土地 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p> <p>③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제2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0조제3항·법 제13조제3항·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7.22></p>
<p>第14條 (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 措置) ①</p>	<p>제22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과 生産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生産하는 者들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폐기 등 처리방법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는 그 告知된 내용에 따라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貯藏段階</p>	<p>처리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의 規定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規定에 의한 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食品衛生法 등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貯藏 또는 運搬하는 者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 처리방법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가 그 告知된 內容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通報하고 關係法令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29></p> <p>第3章 原產地 등의 표시</p> <p>第15條 (原産地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流通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그 原産地를 표시하게</p>	<p>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p> <p>제23조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p>	<p>제23조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개정 2001.10.8>)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原料에 대하여 原産地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對象品目·표시방법·原産地 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품목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2007.9.10, 2008.2.29></p> <p>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16, 2008.2.29></p> <p>제24조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29, 2001.9.1, 2002.7.13, 2006.1.16, 2007.6.26, 2008.7.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은 당해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꽃말 또는 판매용기등에 표시할 것 2.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7.22,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3.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품 4.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품 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7.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과 전통식품 <p>③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표시</p> <p>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p> <p>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다.</p> <p>②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산농산물등·국내가공품 및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9, 2001.9.1, 2007.6.26, 2008.2.29></p> <p>③ 삭제 <2006.1.16></p> <p>제25조 (원산지의 판정기준)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3, 2006.1.16></p> <p>1.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p> <p>2.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도 또는 시·군·구</p>	<p>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또는 표시판·꽃말의 크기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p> <p>제24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7.6.29, 2008.3.3></p> <p>1. 사용된 당해원료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원료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5조의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 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p>	<p>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농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7.9.10></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p>제25조의2(원산지등 표시 대상 영업자)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p>	<p>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물이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p> <p>②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 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2.7.22, 2006.1.25, 2007.6.29, 2008.3.3, 2008.7.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원료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으로 표시 2.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야 한다.</p> <p>②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p> <p>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6.13]</p>	<p>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08.7.7]</p> <p>제25조의3(원산지등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 대상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p> <p>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p> <p>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p> <p>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p>	<p>표시. 다만,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p> <p>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④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5></p> <p>⑤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2008.3.3></p> <p>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이내에 연평균 3개국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p> <p>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08.7.7]</p>	<p>동안에 3개국이상 변경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⑥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8.3.3></p> <p>제24조의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영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7.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 2.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개정 2001.1.29>)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p>	<p>제2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6.26]</p> <p>제27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개정 2001.9.1>)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3, 2007.6.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 	<p>을 표시</p> <p>②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p> <p>[본조신설 2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p> <p>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p> <p>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01.9.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7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產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混同하게 할 目的으로 그 표시를 損傷·변경하는 행위 3. 原產地를 偽裝하여 販賣하거나, 原產地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에 다른 農産物 또는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4.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한 農産物에 다른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p>② 제15조의2제1항의 畜産물을 조리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p>第18條 (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p>	<p>제27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7></p> <p>②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p>	<p>제24조의3 (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3.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p>	<p>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08.2.29></p> <p>③ 삭제 <2006.1.16></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전문개정 2002.7.13]</p>	<p>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본조신설 2001.6.30]</p> <p>제24조의3(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08.7.8]</p> <p>[중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08.7.8>]</p> <p>제24조의4 (원산지 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등)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3.9.25></p> <p>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거·조사</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의 表示對象農産物의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p> <p>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p>	<p>제27조의3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대상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위반물량 : 100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 <p>②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p>	<p>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대상업소, 수거·조사의 방법·시기·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본조신설 2001.6.30] [제24조의3에서 이동 <2008.7.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5.8.4]</p> <p>제18조의3 (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p>	<p>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명·업주명 및 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p>[본조신설 2006.1.16]</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13]</p> <p>第4章 農産物의 檢査 등</p> <p>第19條 (農産物의 檢査)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流通秩序確立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項目· 檢査基準· 방법 및 檢査申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28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6,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p>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 2와 같다.</p>	<p>제25조 (농산물의 검사항목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자재, 포장방법 및 품위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p> <p>제26조 (검사방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하며,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제28조 및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같다)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7조 (검사신청절차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의 장(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신청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참여하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표면에 붙</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0條 (檢査員의 資格)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農産物을 檢査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춘 者(이하 "檢査員"이라 한다)로 하여금 檢査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要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9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잡사류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p> <p>②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 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2.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p>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제28조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법규·검사기준·검사방법등에 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자격구분별로 해당 품목의 등급 및 품위항목등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1.6.30></p> <p>④자격전형의 응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5.29></p> <p>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p> <p>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때</p> <p>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9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60점이상인 자로 한다.</p> <p>제30조 (검사원의 자격관리)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원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③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에 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 (검사원의 교육)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1條 (檢査證明書의 발급등) 檢査員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檢査날짜, 等級 등의 檢査結果를 표시하거나 檢査를 받은 者에게 檢査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第22條 (異議申請 등) ①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檢査現場에서 檢査를 실시한 檢査員에게 再檢査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은 즉시 再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p> <p>제32조 (검사원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33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5에 의하며, 검사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검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4조 (이의신청)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再檢査日부터 7日 이내에 檢査員이 소속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 받은 機關의 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다시 檢査하여 그 結果를 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23條 (檢査判定의 失效)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의 效力이 상실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경과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가 멸실 또는 不明確하게 된 때 <p>第24條 (檢査判定의 取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등을 정정하여야 한다.</p> <p>제35조 (검사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6과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檢査證明書を 偽造 또는 變造한 사실이 확인된 때</p> <p>3.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p> <p>第25條 (보고 및 點檢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入한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나 販賣業者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倉庫·加工工場·店鋪등의 場所에 보관중인 農産物 또는 그 包裝材의 點檢과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 또는 販賣하는 者 등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1항의 規定에 따른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點檢 또는 調査의 일시·목적·대상 등을 關係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p>	<p>제30조 (보고 및 點檢대상 등) 법 제25조제 1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 및 點檢 또는 調査의 대상이 되는 農産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政府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農産物 2. 生産자단체등이 政府를 對行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農産物 3. 政府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農産物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8></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關係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표를 關係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文서를 關係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第26條 (檢査機關의 指定等)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農産物의 生産者團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農業關聯法人 등을 檢査機關으로 指定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指定받고자 하는 者는 檢査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기준·指定節次 및 檢査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定한다. <개정 2008.2.29></p>		<p>제36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37조의 規定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證明할 수 있는 서류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2.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p>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p>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제37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38조 (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상황등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7條 (農産物의 檢定 <개정 2001.1.29>)</p> <p>①農産物의 生産者, 消費者 또는 流通業者 등은 農産物의 去來 및 輸出·輸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産物의 品位·成分·殘留農藥 등에 대한 檢定(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農産物부 장관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檢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檢定을 실시하고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檢定項目·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p>		<p>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39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 (농산물의 검정절차 등 <개정 2001.10.8>)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장비 및 인력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제41조 (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1.1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제42조 (농산물의 검정항목 <개정 2001.10.8>)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항목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1.10.8></p> <p>제43조 (농산물의 검정방법 <개정 2001.10.8>)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위·성분 및 잔류농약등의 검정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8條 (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第19條 第1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檢定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方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는 行위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는 行위 3. 檢査結果의 표시, 檢査證明書 또는 檢定證明書を 偽造하거나 變造하는 行위 4.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꾸는 行위 5. 檢定結果에 대하여 허위 또는 誇大廣告를 하는 行위 <p>제28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개정 2001.10.8></p> <p>제43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는 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6.12.28]</p>		<p>2.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p> <p>3.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p> <p>[본조신설 2007.6.29]</p> <p>제43조의3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p>②제1항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p> <p>③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補則</p> <p>第29條 (農産物の 名譽監視員 <개정 2001.1.29>)</p>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の 公正한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消費者團體 또는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등을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위촉하여 農産物の 流通秩序에 대한 監視·指導·啓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名譽監視員에게 監視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名譽監視員의 資格·위촉방법·任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p>		<p>· 분류·배포 등 정보관리업무</p> <p>3.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p> <p>4. 고객관리 업무</p> <p>5. 농산물정보시스템의 홍보</p> <p>6. 사용자 교육</p> <p>7. 그 밖에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p> <p>[본조신설 2007.6.29]</p> <p>제44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방법 등 <개정 2001.10.8>)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p> <p>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p> <p>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p> <p>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p><개정 2001.10.8, 2002.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p>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2.7.22></p> <p>제44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p>		<p>2.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3.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본조신설 2003.9.25]</p>
<p>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p>	<p>제30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3 (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령2. 원예학개론(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3. 농산물유통론 <p>③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1.16></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3.7.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30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①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08.2.29></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p> <p>④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5 (시험위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6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p>	<p>제44조의3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차 필기시험 : 3만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국으로 등록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2008.2.29></p> <p>②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6, 2008.2.29></p> <p>[본조신설 2003.7.29]</p> <p>제30조의7 (합격자의 공고 등)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자격시험의 시행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2. 2차 실기시험 : 5만5천원</p> <p>③영 제3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영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03.9.25]</p> <p>제44조의4 (자격증 교부 등 <개정 2006.1.25>)</p> <p>①영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p> <p>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본조신설 2003.7.29]</p>	<p>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③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5></p> <p>[본조신설 2003.9.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p> <p>第30條 (褒賞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主務官廳 또는 搜查機關에 申告 또는 告</p>	<p>제31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發한 者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 2008.2.29></p> <p>第31條 (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品質向上·標準規格化 및 物流標準化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者에게 包裝資材·施設 및 自動化裝備의 買入 등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業人 2. 生産者團體 3.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流通關聯事業者 및 團體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産物의 流通을 원활히 하고 品質向上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p>	<p>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16, 2007.6.26></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2008.2.29></p>	<p>제45조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를」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서 우선적으로 上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p> <p>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購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 및 地理的の特産品을 우선적으로 購買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p> <p>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p>		<p>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p>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p> <p>3. 농산물을 계약재배·양식 또는 수집하여 이를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p> <p>[전문개정 2001.6.30]</p> <p>제46조 (수수료)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 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1.10.8, 2006.1.25></p> <p>②법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p> <p>3.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4. 제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p> <p>5. 제7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p> <p>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p> <p>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p> <p>8.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p> <p>[전문개정 2005.8.4]</p>		<p>다. <개정 2001.10.8, 2008.3.3></p> <p>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p> <p>2.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p> <p>3.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다만, 품질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품질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p> <p>③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농산물의 가격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6.1.25, 2008.3.3></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33條 (聽聞)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機關의 指定取消 1의2. 제7조의3제4항의 規定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指定 취소 1의3. 제7조의4제3항의 規定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指定 취소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의 금지, 認證·登錄의 取消 등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判定의 取消 4.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5. 제29조의6제1항의 規定에 의한 資格취소 		제47조 삭제 <2008.7.8>
<p>第34條 (權限의 위임·위탁 등 <개정 2002.1.14>)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山林廳長, 시·도지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p>	<p>제32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法 제34조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에 관한 權限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權限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005.8.4,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者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林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의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8.4></p>	<p>2. 법 제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3.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規定에 의한 표준규격품·지리적 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6. 법 제38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 행위에 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2007.12.6, 2008.2.29> 1. 법 제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폐지</p> <p>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p> <p>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의2.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인증</p> <p>3의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의4.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의5.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p> <p>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p> <p>5.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 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임산물 및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7의2.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 명령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 씨·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등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1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등의 검정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13.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4.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p> <p>15.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부</p> <p>1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16, 2008.2.29></p> <p>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p> <p>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p> <p>⑤ 삭제 <2001.9.1></p> <p>⑥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1.9.1, 2002.7.13, 2006.1.16></p> <p>제32조의2 (업무의 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罰則</p> <p>제34조의2 (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본조신설 2002.12.26]</p> <p>第35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6.13></p> <p>1. 第9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p>	<p>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7.6.26,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1.16, 2007.6.26, 2007.12.6, 2008.2.29> [본조신설 2003.7.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準規格品表示・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地理的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p> <p>2. 第9條第2項 各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地理的産品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한 者</p> <p>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p> <p>4. 第28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을 받은 者</p> <p>5. 第28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의 표시 등을 偽造하거나 變造한 者</p> <p>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p> <p>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p> <p>[전문개정 2005.8.4]</p> <p>第3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38條 (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 	<p>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7]</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p> <p>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p> <p>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p> <p>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667호,1999.1.21></p> <p>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農産物檢査法은 이를 廢止한다.</p> <p>第3條 (農水産物の 標準規格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 第</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6444호,1999.6.30></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은 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39호,1999.8.9></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은 이를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2. 농산물검사규격규칙 3. 농산물검사료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標準出荷規格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으로 본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農水産物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으로 본다.</p> <p>第4條 (檢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은 이 法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公務員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이 있는</p>	<p>29조의 規定에 의한 해당 종류별 檢査원 의 資格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한다.</p> <p>제1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p> <p>제3조의 제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30인이내"를 "20인이내"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마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로 한다.</p> <p>제3조의2의 제목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p>	<p>4.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p> <p>5.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p> <p>6.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p> <p>7. 국립수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p> <p>제3조 (품질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품질인증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7.31></p> <p>제4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0조의 規定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1999년 9월 30일까지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5조 (원산지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規定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23조 및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것으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받은 檢査結果 또는 교부받은 檢査證明書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p> <p>第5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및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 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 그 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第6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및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p> <p>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題名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 관한法律"을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p>	<p>며, 동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로 한다.</p> <p>제9조제1항중 "15인이하"를 "10인이하"로 한다.</p> <p>제11조제2항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으로 한다.</p> <p>제1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p> <p>제1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당해 전통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받고 10년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p> <p>제16조제3항중 "지체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p> <p>제17조의2·제18조·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24조중 "곡류·채소류·과실류등"을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중"으로 한다.</p> <p>제27조제3항중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를 "품질인증을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하</p>	<p>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 (검사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인은 이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표시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물벼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동 검사기관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354호,1999.12.31></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條중 "農水産物の 適正한 品質管理를 통하여"를 "農水産物の"로 한다.</p> <p>第2條第6號를 削除하고, 同條第7號중 "農水産物 또는 農水産物을 原料로 하여"를 "農水産物을 原料로 하여"로 하며, 同條第8號를 削除한다.</p> <p>第4條의 題目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同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審議會"를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며, 同條第2項 本文중 "각 審議會"를 "審議會"로 하고, 同項第1號중 "産地加工支援對象者の 지정,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을 "傳統食品의 品目指定"으로 하며, 同項第2號·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項第6號중 "農水産食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p> <p>第5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本文중 "産地加工 支援對象者로 지정된 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로 한다.</p>	<p>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후단을 삭제한다.</p> <p>제32조·제34조·제37조 내지 제40조·제41조의2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3조제1항제1호 가목중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 동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농림축산특산물"을 "특산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을 "다음 각목의 권한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가목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를 "농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및 인증품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 및 동조제3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4조를 삭제한다.</p> <p>②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 ①내지 ③생략</p> <p>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p>⑤및 ⑥생략</p> <p>제4조 생략</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工場設置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第6條第4項·第8條 및 第9條를 각각 削除한다.</p> <p>第3章의 題目중 "農水産物"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p> <p>第12條를 削除한다.</p> <p>第13條第5項 但書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를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同條第6項 내지 第8項을 각각 削除한다.</p> <p>第14條·第15條 및 第15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p> <p>第16條의 題目중 "規格品"을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 등"으로 하고, 同條중 "農水産物 또는 加工品"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標準出荷規格이 표시된 農水産物 또는 認證表示가 된 特産物 등"을 "品質認證表</p>	<p>별표 2 제5호 및 제6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示가 된 特産物 등"으로 한다.</p> <p>第17條·第17條의2·第17條의3 및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p> <p>第19條第1項중 "農水産物加工技術 등의 보급과 農水産物 및 加工品の 品質管理 또는 標準規格化의 促進을 위하여"를 "農水産物加工技術 등의 보급과 加工品の 品質管理를 위하여"로 한다.</p> <p>第22條·第23條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24條를 각각 削除한다.</p> <p>第25條중 "第22條 및 第23條 또는 第24條"를 "第23條"로 한다.</p> <p>第26條를 削除한다.</p> <p>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5條第30號 및 第6條第25號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각각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p> <p>③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8條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p> <p>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중전의 農産物檢査法 또는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關한法</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律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6191호,2000.1.21> 이 法은 200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6378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農産物(親環境農業育成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로 한다.</p>	<p>부칙(해양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본문 및 동조제6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p> <p>부칙 <제17230호,2001.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해양수산물부위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5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각호외의 부분, 제16조 각호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p> <p>부칙 <제1389호,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에 시행한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p>

<p align="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align="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align="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부칙(인삼산업법)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p>	<p>부칙(인삼산업법시행령) <제17242호,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p>	<p>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1395호,2001.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p>
<p align="center">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 align="center">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7351호,2001.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 align="center">부칙 <제1400호,200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align="center">부칙 <제1421호,2002.7.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산물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p> <p>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p> <p>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로 한다.</p> <p>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p>	<p>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p> <p>제1조 및 제2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p> <p>제4조·제25조제1항제2호·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제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2조 본문·제1호·제2호, 제23조 본문,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p> <p>제3조제1항중 "(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p> <p>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측된 농산물명예감시원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1447호,200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15호,2006.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561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제5호중 "함은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을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p> <p>제2조제6호중 "生産·採取 또는 捕獲된 國家·地域 또는 海域"을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p> <p>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遺傳子變形農水産物"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로 한다.</p> <p>제3조제1항중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로 한다.</p> <p>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p>	<p>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제6조제2항중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p> <p>제7조·제13조 및 제16조제1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p> <p>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p> <p>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p> <p>제10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각각"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로 한다.</p> <p>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5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3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3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p> <p>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 본문중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패류毒素·食中毒菌"을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土壤·用水·漁場·資材"를 각각 "土壤·用水·資材"로 한다.</p> <p>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表示對象農水産物"을 각각 "表示對象農産物"로 한다.</p>	<p>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p> <p>제11조중 "농산물심의회,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p> <p>제14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제22조 본문중 "용수·어장"을 "용수"로 한다.</p> <p>제23조 단서,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수입농수산물"을 각각 "수입농산물"로 한다.</p> <p>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제2호·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수입농수산물등"을 각각 "수입농산물등"으로 한다.</p> <p>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을 "국산농산물등"으로 한다.</p> <p>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農水産物名譽監視員"을 각각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한다.</p> <p>제34조제2항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p> <p>②내지 ⑤생략</p> <p>제9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595호,2002.1.14></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816호,2002.12.26></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675호,2005.8.4></p> <p>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5조제1항 본문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국산농수산물"을 각각 "국산농산물"로 한다.</p> <p>제26조의 제목,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의 제목, 제27조제1항 본문,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란의 바목·사목, 별표 3 제3호 가목(1)의 제목 및 별표 3 제3호 가목(2)의 제목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p> <p>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p> <p>제32조제6항중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제3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과권자는"을 각각 "농림부장관은"으로 한다.</p> <p>②내지 ⑥생략</p> <p>제7조 생략</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7996호,2006.9.27></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중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로 한다.</p>	<p>부칙 <제17674호,2002.7.13></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제18071호,2003.7.29></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개정령) <제18312호,2004.3.1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제8103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⑬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p> <p>부칙 <제19279호,2006.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0103호,2007.6.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431호,2007.12.6></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격시험의 관리는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3> 까지 생략 <29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 단서,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3조제1호,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제3호·제4호,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제7조의5제1항 본</p>	<p>⑩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30조의2, 제30조의3제4항, 제30조의4제2항·제3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제1항·제2항, 제30조의7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4제3항, 제18조제6</p>	<p>⑪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제15조의10,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3항제3호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제6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2항제3호·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63> 까지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 2008.6.20></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p> </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문 및 단서·제2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8조의2제1항·제3항, 제29조의2, 제29조의4제1항,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7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의2제3항·제4항·제5항 단서,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4제1항 전단·제5항, 제7조의5제1항 본문·제</p>	<p>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4항, 제29조제5항, 제30조의6제2항·제3항, 제30조의7제2항 및 제3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⑪ 부터 <59> 까지 생략</p>	<p>15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제6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4항 본문·제5항 단서·제7항, 제28조의2제2항·제4항, 제29조의3제3호 및 제32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9117호,2008.6.13></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908호,2008.7.7></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제2호·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호,2008.7.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 차

별표1.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19조 관련)	109
별표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28조제2항 관련)	110
별표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11

표시변경등의 처분기준(제19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3)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당해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6월	-	-

나. 품질인증품

행정 처분 대상	해당법조문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 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 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다. 우수농산물인증품

행정 처분 대상	해당법조문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 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 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 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라. 이력추적관리품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
(4)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5)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마. 지리적특산품

행정처분대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3)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
(4)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5)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때	법 제11조	등록취소	-	-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28조제2항관련)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가. 곡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라.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마.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 류
 (1) 조곡 : 콩·팥·녹두
 (2) 정곡 : 현미·쌀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별표 3] <개정 2008.7.7>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	300만원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 나목	300만원
다.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포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1호 다목	300만원
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300만원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300만원
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500만원
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점검 또는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2호	5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3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자. 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쇠고기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3호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4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카.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5호	800만원

3. 제2호아목 및 차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 등

(1)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당해 업소의 판매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할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나.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1)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 준 액(연간매출액)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 이상위반
1억원 미만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00	1,000
20억원 이상	1,000	1,000

- 1) "2차이상위반"이라 함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 2)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신규영업·휴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 4) 1개업소에서 2개품목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가. (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 (나) (가)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 차

별표1.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17
별표2. <개정 2001.10.8>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Ⅰ
별표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관련)	118
별표3의2 <개정 2007.6.29>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3 관련)	Ⅱ
별표3의3 <개정 2007.6.29>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15조의5관련)	Ⅲ
별표3의4 <신설 2006.1.25>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Ⅳ
별표3의5 <신설 2006.1.25>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7관련)	Ⅴ
별표3의6 <신설 2006.1.25>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Ⅵ
별표3의7 <개정 2007.6.29>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13 관련)	Ⅶ
별표4 <개정 2008.7.8>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Ⅷ
별표4의2 <신설 2008.7.8>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24조의3 관련)	Ⅷ
별표5. <개정 2006.1.25>검사표시인(제33조관련)	Ⅷ
별표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제23조관련)	128
별표7. <개정 2001.6.30>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관련)	Ⅷ
별표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관련)	130
별표9. <개정 2001.10.8>농산물의 검정항목(제42조관련)	Ⅷ
별표10. <개정 2002.7.22, 2006.1.25>수수료(제46조제1항관련)	131

[별표 1] <개정 2001.10.8>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 (1) 도형의 가로 길이(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10/100 \times W$ 로 한다.
-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 \times W$ 로 한다.
-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생산자단체일 것

나. 인력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 (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인이상을 포함한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

(2) 심사원은 다음(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일 것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단체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등을 위하여 3~4개의 시·군 단위별로 10m²이상의 검정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의 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 비 명	최소비치 기 준 (대·개)	조 건
○ 저 울	이상	
- 첫달림 0.1g이하, 끝달림 600g이상	1	자체보유
- 첫달림 20g이하, 끝달림 40kg이상	1	
○ 사동기	1	"
○ 시료균분기	1	"
○ 시험용정미기(정맥기)	1	"
○ 미립투시기	1	"
○ Micro Meter	1	"
○ 도정도 감정기구(5칸이상)	1	"
○ 감정접시(원형)	50	"
○ 표준그물체(1.4mm, 1.7mm)	각 1조	"
○ 정곡용 색대(∅13mm)	2	"
○ 당도계	1	
○ 지름관	1	"
○ Incubater	1	"
○ 잔류농약 속성분석용 장비	1조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험연 구기관에 분석의뢰 가능
○ 적외선 수분측정기	1	"

4. 품질인증업무규정

품질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7조제4항제 1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나. 품질인증을 허위로 한 경우	법 제7조제4항제 2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품질인증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1)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 (2)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심사원으로 하여금 품질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기타 품질인증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4항제 2호	경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3 관련)

1. 표지도표



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번호 :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글자 색상은 검정색(Black 100)으로 한다.

(2)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Cyan 76 + Yellow 91)으로 한다.

(3) GAP 모양의 색상은 청색(Cyan 91 + Magenta 43)으로 한다.



마.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시



인증기관:

인증번호:

나. 표시사항 : 산지(시도·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심별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나목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 원산지표시규정에 의하여 기재

다.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라.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마.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바. 생산자(작목반명) : 생산자성명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사.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15조의5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우수농산물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2인 이상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 우수농산물관리관련 법령,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수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수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2. 시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 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X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X			
수확 후 관리설비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X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X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 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X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X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X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미세척	세척	
저장(예냉) 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수송·운반 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X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X		
위생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X		
관리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방법 마련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다.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때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관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7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출 것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시설

-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석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인증의 사후관리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인증심사원 교육

바.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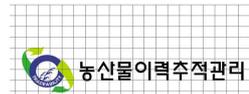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다.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13 관련)

1. 표지도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화살표는 연두색으로(Cyan 30 + Yellow 100) 한다.
-  (2)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 한다.
-  (3)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나. 표시사항 :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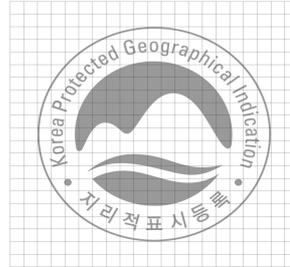
-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심벌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바. 제3호나목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 가.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나.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다.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 라.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 마. 생산자 : 생산자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 바.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1. 표지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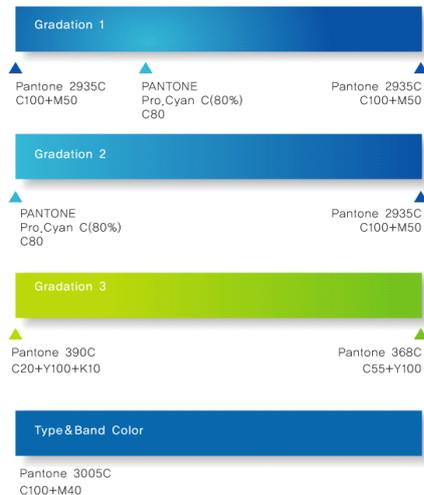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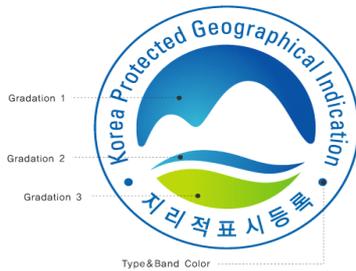
2. 도표제작 방법

가. 도형표시

나. 한글표기는 윤고딕 140 서체를 사용하며, 영문표기는 Universe 57 Condensed 서체를 사용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하늘과 물결색은 Pantone 2935c(Cyan 100% + Magenta 50%)와 Pantone Pro Cyan C색의 80%에 해당하는 Cyan 80%사이의 색상을 사용한다.
- 2) 녹색들판의 색은 Pantone 368c(Cyan 55% + Yellow 100%)과 Pantone 390c(Cyan 20% + Yellow 100% + Black 10%)로 한다.
- 3) 테두리 및 타입의 색깔은 Pantone 3005c(Cyan 100% + Magenta 40%)로 한다.



3. 표시사항

	<p>등록명칭: (영문등록명칭)</p> <p>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등록 제○○○○호</p> <p>생산자:</p> <p>주소(전화):</p>
<p>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p>	

4. 표시방법

-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나. 위치: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라.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 등록명칭(한글, 영문): 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 그 밖의 문자: 가로 0.8cm(23point)×세로 1.0cm(28point)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24조의3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 가. 쌀·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풋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풋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풋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젓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4)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햄버거(쇠고기: 호주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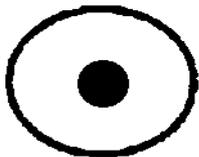
5. 그 밖의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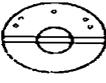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등을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검사표시인(제33조관련)

종 류	도 안	구 분	치수(mm)	
			1호	2호
특 등	특	중	35	18
		형	20	10
		중간형	24	12
		획 폭	3	1.5
1 등		테두리직경	40	20
		테두리 폭	4	2
		점 직 경	12	6
2 등		테두리중	40	20
		테두리 중간	23	12
		테두리 폭	4	2
		점 직 경	8	4
3 등		테두리 각원 직경	20	10
		테두리폭	4	2
		점직경	6	3
등 외		각변의 길이	33	12
		각변의 폭	4	2
합 격		각변	33	12
		외원직경	18	9
		획 폭	4	2
불 합 격		중	30	15
		형	25	13
		획 폭	4	2

종 류	도 안		구 분	치수(mm)	
				1호	2호
검 사	<h1>검 재 X 씨</h1>		중 형 획 폭	30 25 4	15 13 2
재 검 사			중 형 획 폭	30 25 4	15 13 2
말 소			각 변 획 폭	40 4	20 2
종 자			중 형 획 폭	30 25 4	15 13 2
특별기호		※ 원내에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표기를 삽입한다	원직경 원획폭 자획폭	40 3 3	20 1.5 1.5
검사일부인 (국내용)		※ 원내 상단에는 검사기관명을 삽입한다. ※ 두줄 중앙에는 검사일자를 삽입한다. ※ 원내 하단에는 검사원번호를 삽입한다.	외원직경 내원직경 일자인란폭	28 16 8	14 8 4
검사일부인 (수출용)		※ 상단에 검사기관명(영자)을 삽입한다. ※ 하단에 국명(영자)을 삽입한다.	중경 횡경	35 50	18 25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제23조관련)

종류	품목	검사시행시기	유효기간 (일)
곡류	벼·콩	5.1~9.30	90
		10.1~4.30	120
	겉보리·쌀보리·팥·녹두·현미·보리 쌀	5.1~9.30	60
		10.1~4.30	90
	쌀	5.1~9.30	40
		10.1~4.30	60
특용작물류	참깨·땅콩	1.1~12.31	90
과실류	사과·배	5.1~9.30	15
		10.1~4.30	30
	단 감	1.1~12.31	20
	감 굴	1.1~12.31	30
채소류	고추·마늘·양파	1.1~12.31	30
잡사류	누에씨	1.1~12.31	365
	누에고치	1.1~12.31	7
기타	농림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유효기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개정 2001.6.30>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부서를 두어야 한다.
-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종류			검사인력 최소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류	조곡	포장물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산물	검사장소 1개소당 1인
		정곡		검사장소 2개소당 1인
	서류, 특용작물류, 과일류, 채소류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수입농산물	공통			항구지 1개소당 3인

2. 시설

검사건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종류	장비명	최소비치기준(대 · 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공통	○저울		
	- 첫달림 0.01g이하, 끝달림 300g이상(산물을 제외한다)	1	
	- 첫달림 0.1g이하, 끝달림 600g이상	1	
	- 첫달림 5g이하, 끝달림 10kg이상(산물을 제외한다)	1	
	○시료균분기(과실 · 채소류를 제외한다)	1	
	○용적중 측정기(산물을 제외한다)	1	
	○Micro Meter(곡류를 제외한다)	1	
	○검사증인(해당품목)		1조
○휴대용 수분측정기		1	

나. 종류별 검사장비

구분	종류	종목	장비명	최소비치기준(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국산농산물(수출용을 포함한다)	곡류 검사	조곡 (포장물)	○동력제현기 ○기준분동 ○감정접시(원형) ○줄채(1.6mm) ○세로눈판채(2.0mm, 2.2mm, 2.4mm, 2.5mm) ○표준그물채(1.4mm, 1.7mm) ○둥근눈채(4.00mm, 5.45mm, 7.27mm, 7.88mm) ○색대(조곡용 Ø16mm, 정곡용 Ø13mm) ○인습기	1 1 50 각1조 각1조 각1조 각1조 각1조	각2개 1
		조곡 (산물)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측정용)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측정기. 다만, 1회 수분측정용량이 5g이상이고 12%~35% 범위의 수분함량 측정이 가능한 수분측정기로 대체가능 ○동력제현기 ○감정접시(원형) ○줄채(1.6mm) ○세로눈판채(2.0mm, 2.2mm, 2.4mm, 2.5mm) 단, 보리수매 장소에 한함 ○표준그물채(1.4mm, 1.7mm) ○색대(조곡용 Ø16mm, 정곡용 Ø13mm) ○인습기 ○판수동 저울(첫달림 50g이하, 끝달림 100kg이상)	1 1 1 1 50 각1조 각1조 각1조 1	각1개 1

구분	종류	종목	장비명	최소비치기준(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정곡	○도정도 감정기구(5칸이상) ○표준그물체(1.4mm, 1.7mm) ○색대(조곡용 Ø16mm, 정곡용 Ø13mm) ○인습기 ○감정접시(원형)	1 각1조 50	각2개 1
국산농산물 (수출용을 포함한다)	특작 · 서류 검사		○항온건조기(105℃) ○시료분쇄기(믹서기) ○그물체(0.84mm) ○검사봉 ○색대(Ø13mm)	1 1 1	1 2
	과실 · 채소류 검사		○항온건조기(105℃) ○PH메타 ○당도계 ○지름관	1 1	1 1
수입농산물	곡류 검사		○정미·정맥기 ○발아시험기 ○미립투시기 ○입체현미경 ○Motomco 수분측정기 ○이중관색대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색대(Ø13mm)	1 1 1 1 1 1 1	2
	특작 · 서류 검사		○입체현미경 ○그물체(0.84mm) ○Motomco 수분측정기 ○유분 및 산가분석기 ○색대	1 1 1 1	2

4. 검사업무규정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중 2이상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 1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나. 검사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 2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검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 2호	경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경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농산물의 검정항목(제42조관련)

구분		검정항목
측정	(1)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중종자, 용적중, 이물, 싸라기, 입도, 이중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과균비율, 색깔비율, 결점과율, (조)회분, 사분 등
	(2) 발아율 (3)도정수율	○ 발아율, 발아세(맥주보리에 한한다)등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도정률 등 ○ 맥류의 정배률 등
분석	(4) 일반성분	○ 수분, 산가, 산도, 단백질, 지방, 조섬유, 당도등
	(5)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질산염등
	(6) 유해성 중금속	○ 비소, 납, 주석, 아연, 수은등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8) 아플라톡신	○ 아플라톡신 B ₁ 등

[별표 10] <개정 2002.7.22, 2006.1.25>

수 수 료(제46조제1항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품질인증 신청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1	30,000

2. 우수농산물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 신청	1	50,000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1	100,000

4.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5. 지리적표시 등록수수료

항 목	건 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6.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 류 별	품 목	중 량	단 위	수수료(원)
곡 류	○ 팔	40kg	대	30
	○ 녹 두	40kg	대	30
	○ 기타 곡류 전품목	40kg	대	20
서 류	○ 전품목	40kg	대	20
특 용 작물류	○ 참 깨	40kg	대	40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40kg	대	20
과 실 류	○ 전품목	15kg	상자	20
채 소 류	○ 고 추	20kg	대	30
	○ 기타 채소류 전품목	20kg	대	20
잡 사 류	○ 누에씨	-	-	없 음
	○ 누에고치	10kg	-	20
수 입 농산물류	○ 정 곡	1톤	-	70
	○ 기타 수입농산물류 전품목	1톤	-	6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7.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 분		검 정 항 목	단 위	1항목당 수수료(원)
측 정	(1) 품 위	○정립, 피해립, 이중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중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과균비율, 색갈비율, 결점과율	1항목	1,000
		○(조)회분	1점	400
		○사 분	1점	1,400
시 험	(2) 발아율	○발아율, 발아세	1항목	2,500
	(3) 도정수율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1항목	3,600
		○백류의 정백률	1항목	5,700

구 분		검 정 항 목	단 위	1항목당 수수료(원)	
분	(4) 일반성분	○ 수 분	1점	400	
		○ 단백질	1점	1,800	
		○ 지 방	1점	2,600	
○ 조섬유		1점	600		
○ 산 가		1점	3,000		
○ 산도, 당도		1항목	1,400		
석	(5)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1성분	3,900	
		○ 질산염	1점	21,200	
	(6) 유해중금속	○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등	1성분	5,000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 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38,000
			(8) 아플라톡신	○ 아플라톡신 B ₁	1성분
(9) 항생물질	○ 항생제	1성분	25,000		
	○ 합성항균제	1성분	25,800		
	○ 호르몬제	1성분	180,3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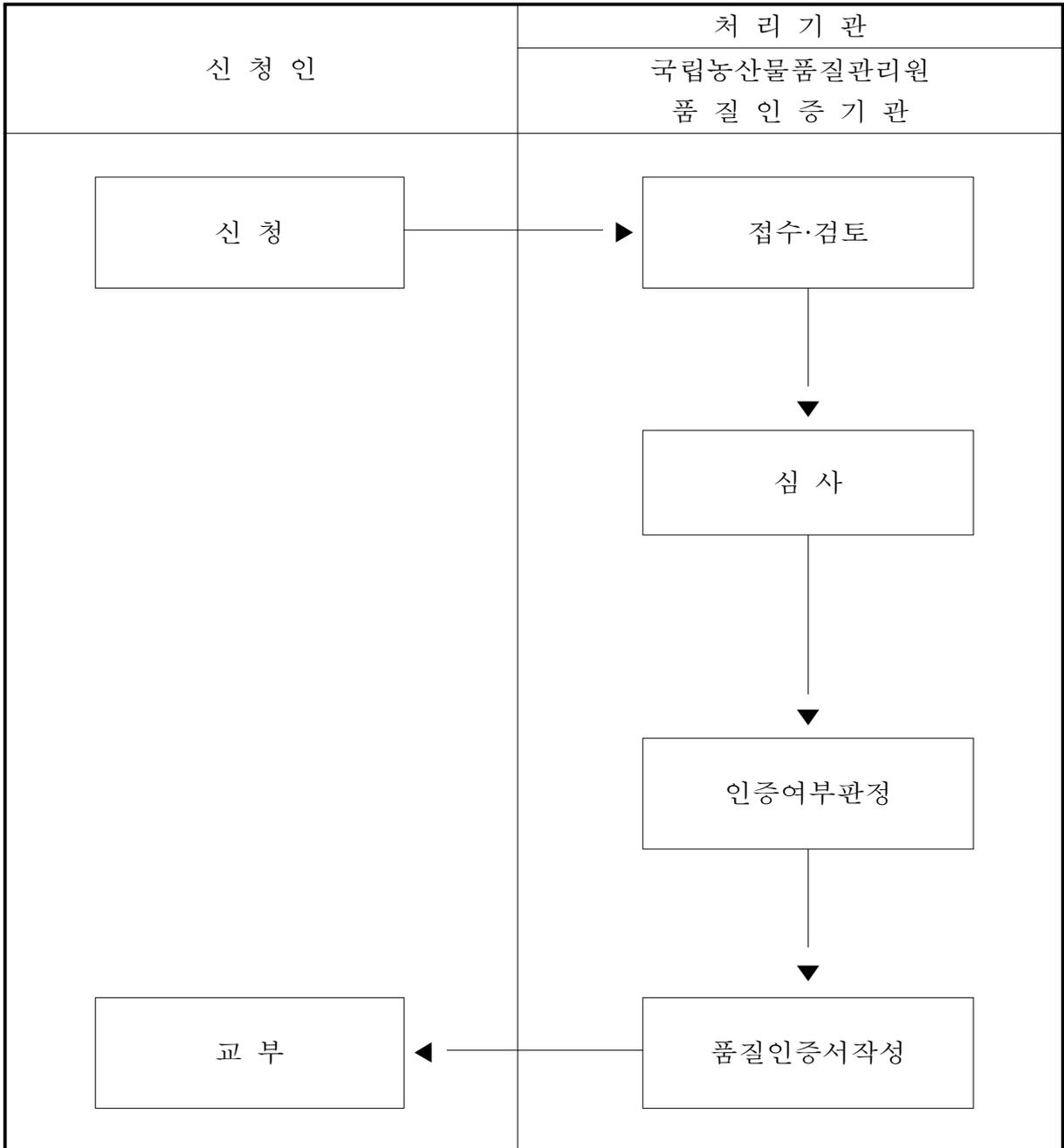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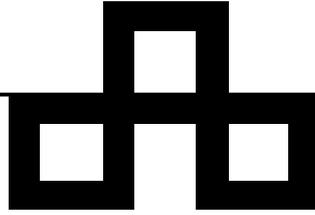
목 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7.22, 2006.1.25>7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2.7.22> 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7.22, 2006.6.30>83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7.22> 9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07.6.29>0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07.6.29> 1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07.6.29> 1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07.6.29> 2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06.1.25> 2 별지 제4호의7서식 <신설2006.1.25, 2006.6.30> ...441 별지 제4호의8서식 <개정 2007.6.29> 2 별지 제4호의9서식 <개정 2007.6.29> 2 별지 제4호의10서식 <개정 2007.6.29> 2 별지 제4호의11서식 <신설 2006.1.25> 2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07.6.29> 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6.29> 8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8.7.8> 9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7.8> 1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7.22> 10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7.22> 11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2.7.22> 12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7.22> 1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7.22> 14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2.7.22> 1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2.7.22> 15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2.7.22> 15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2.7.22, 2006.6.30>751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2.7.22> 16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2.7.22> 19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7.6.29> 19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1.25> 16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03.9.25> 16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06.1.25> 16
---	--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품질인증서

1. 인증번호 :
2. 생 산 자 :
3. 주민등록번호 :
4. 주 소 :
5. 품 목(품 중) :
6. 인 증 항 목 :
7. 유효 기 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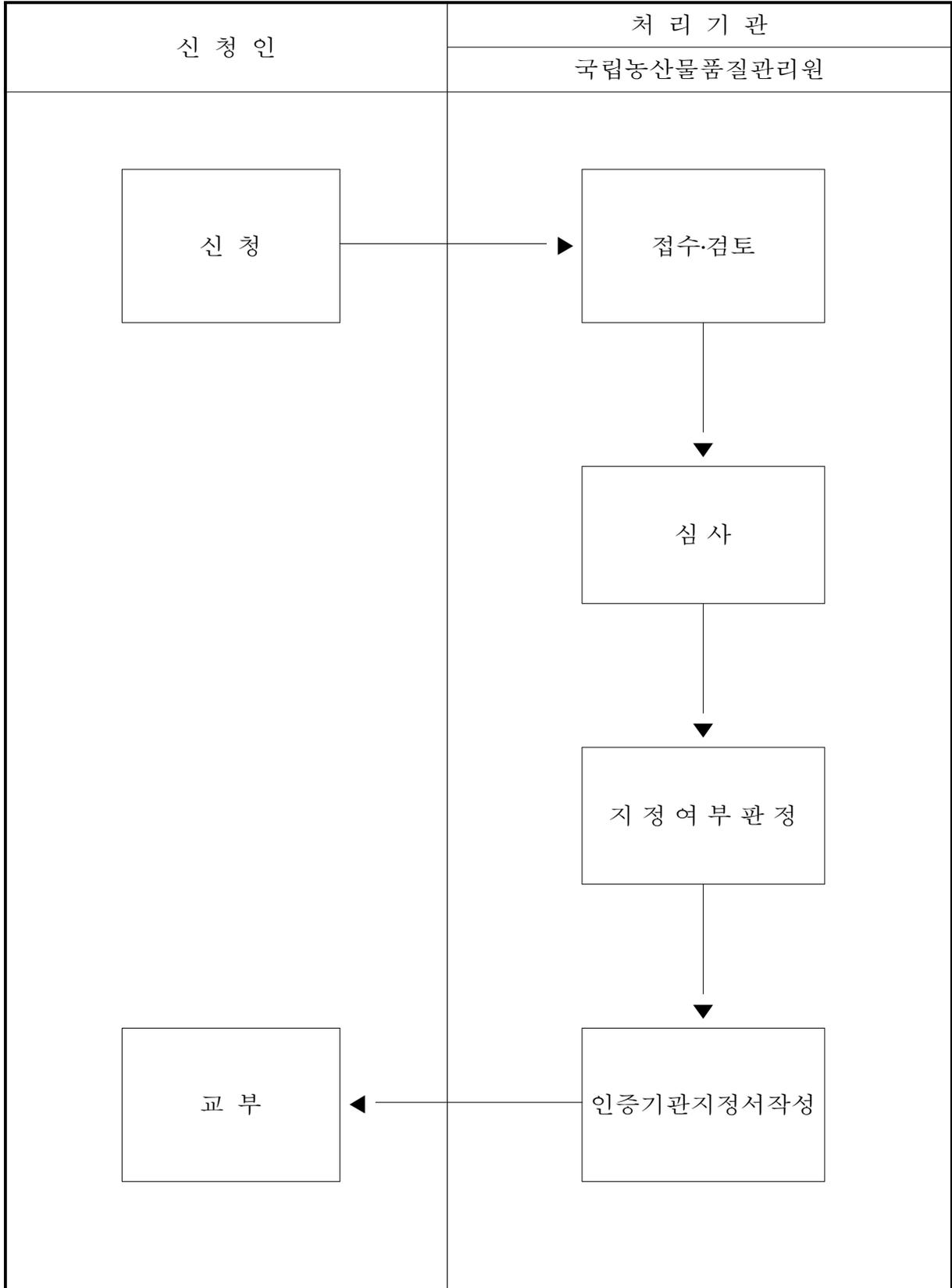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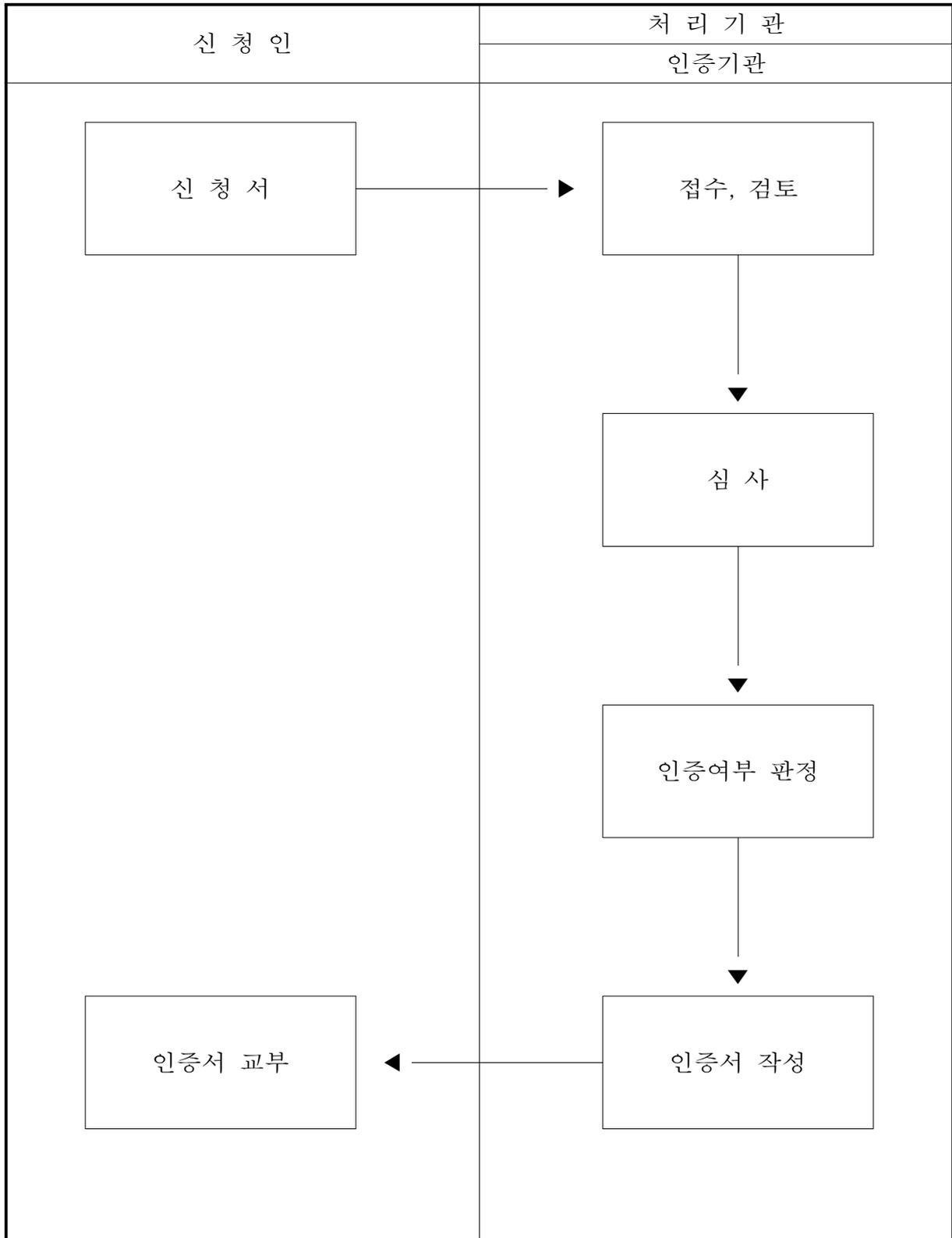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 수 농 산 물 인 증 서

1. 인증번호 : 제 호
2. 생산자(조직명) : (농가수 : 명)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5. 품목명 :
6. 재배면적(m²) :
7. 재배지역 :
8. 유효기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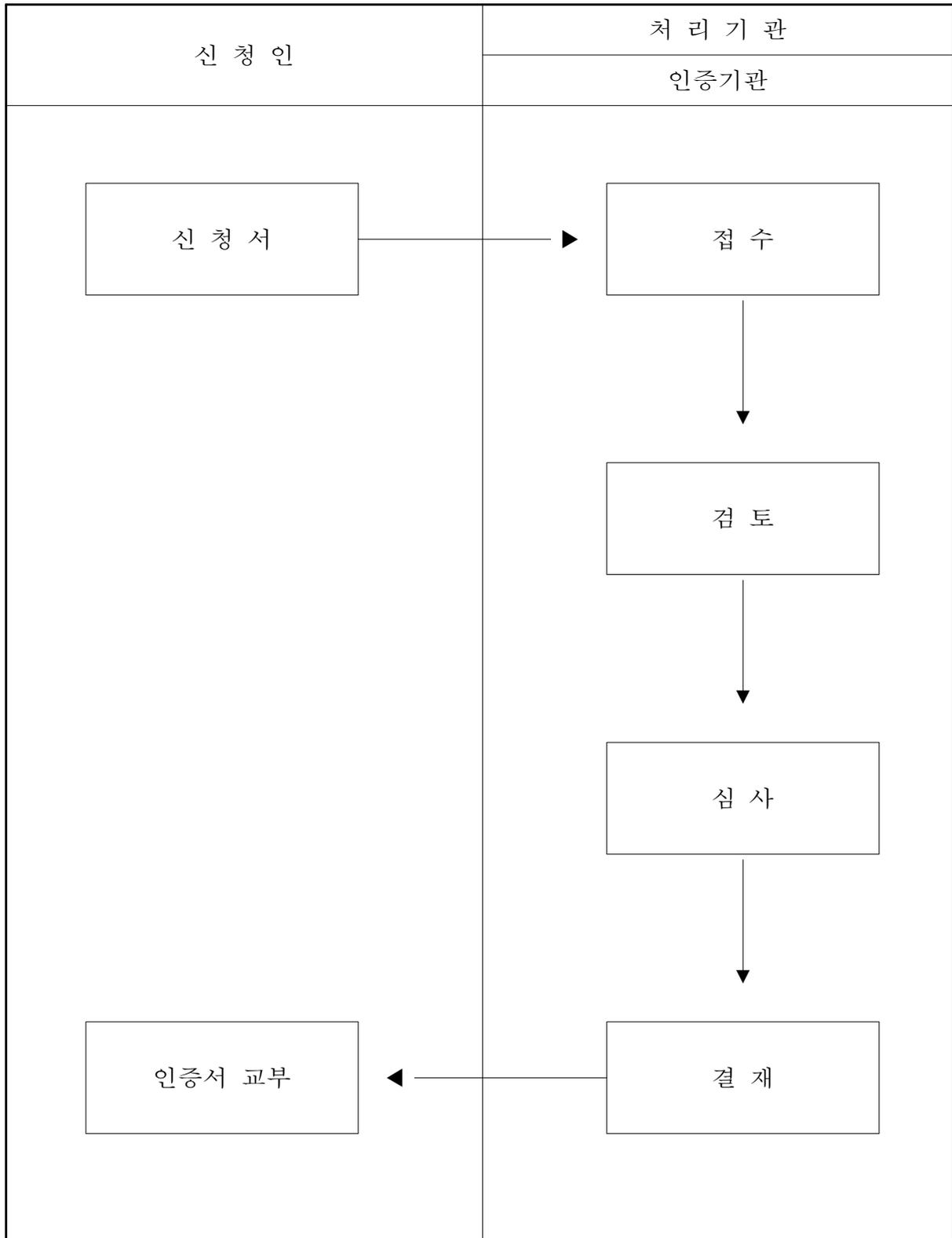
년 월 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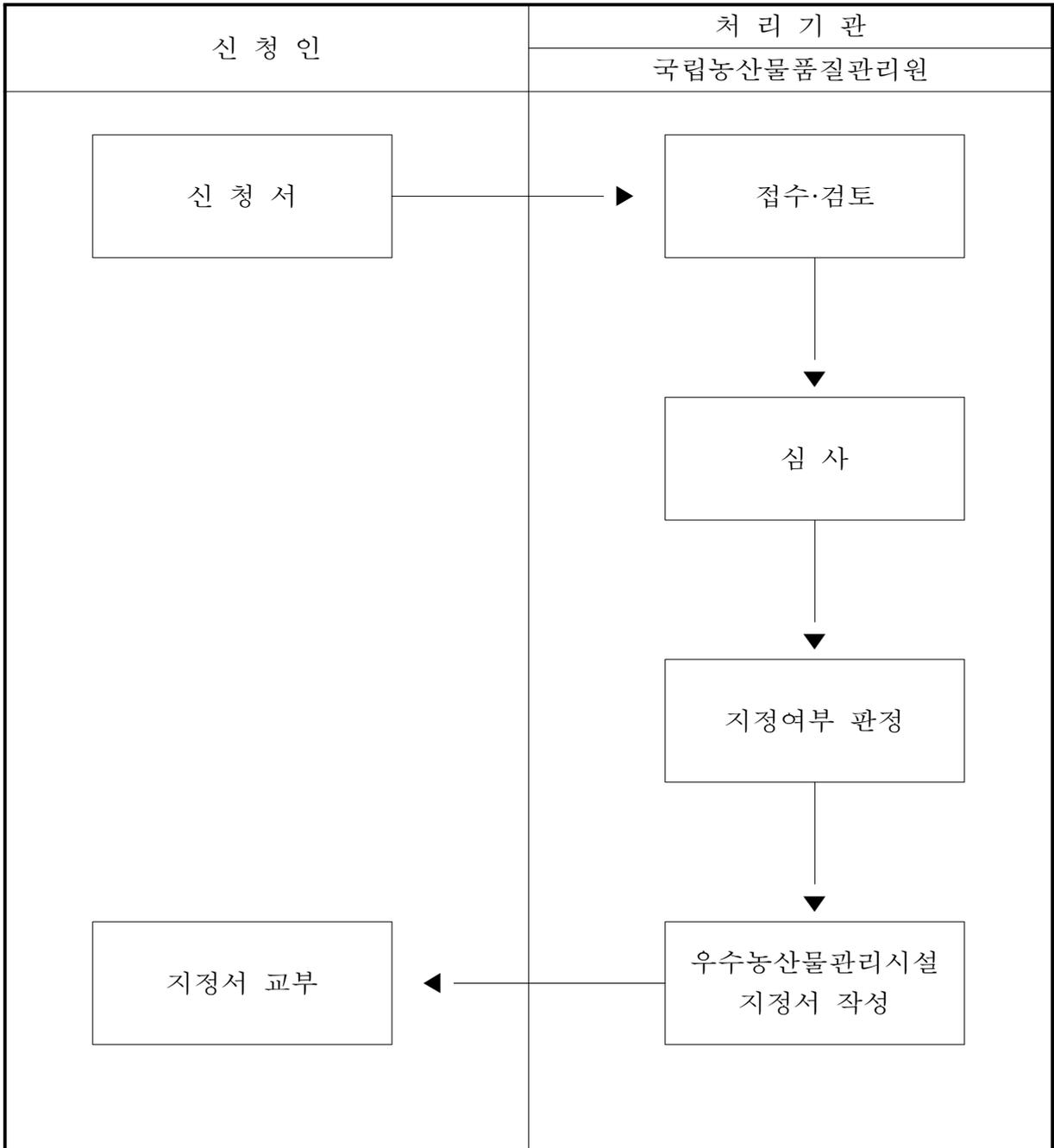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 수 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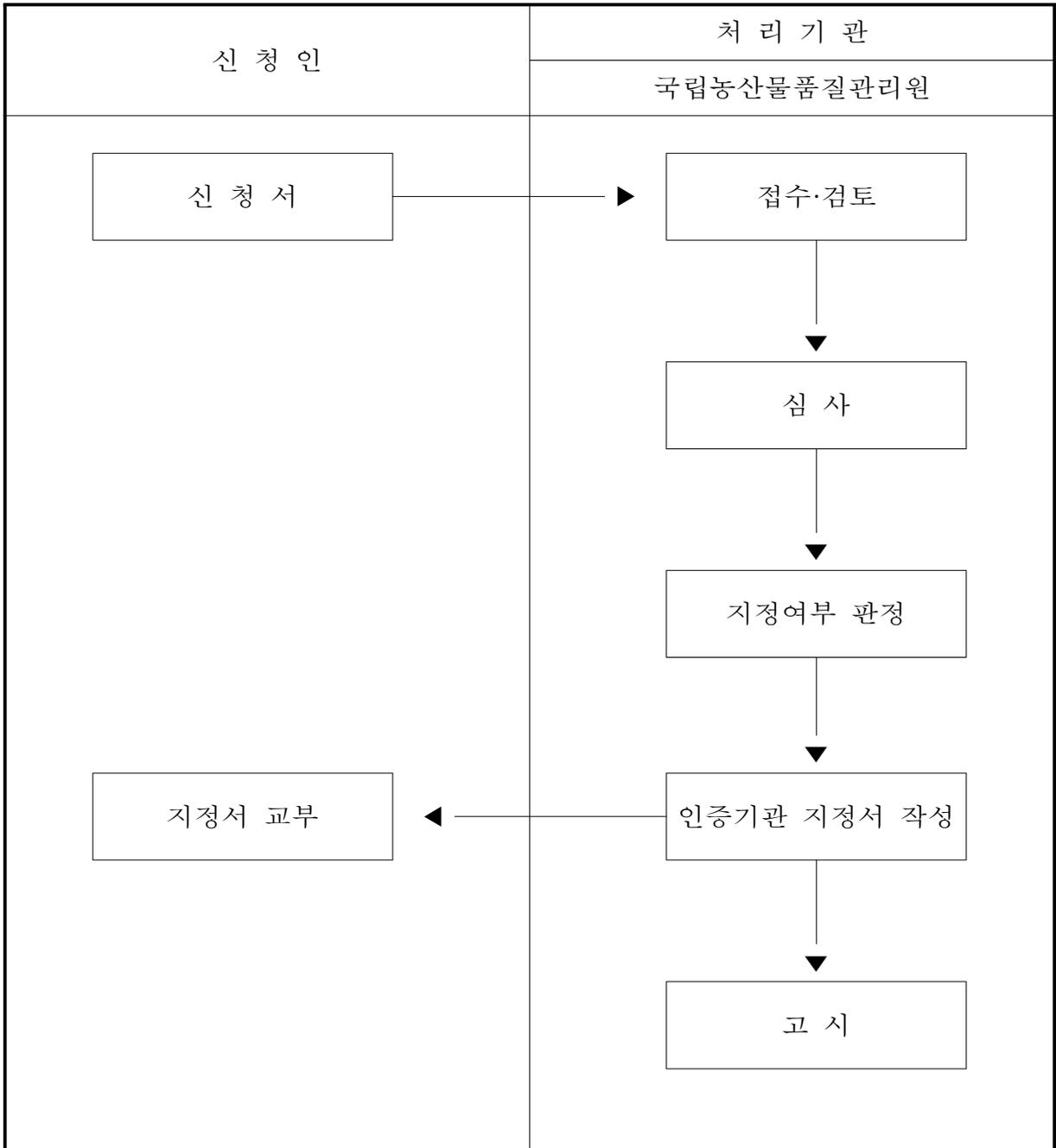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			
지 정 번 호			
관 리 시 설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지 정 일 자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수 수 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인증업무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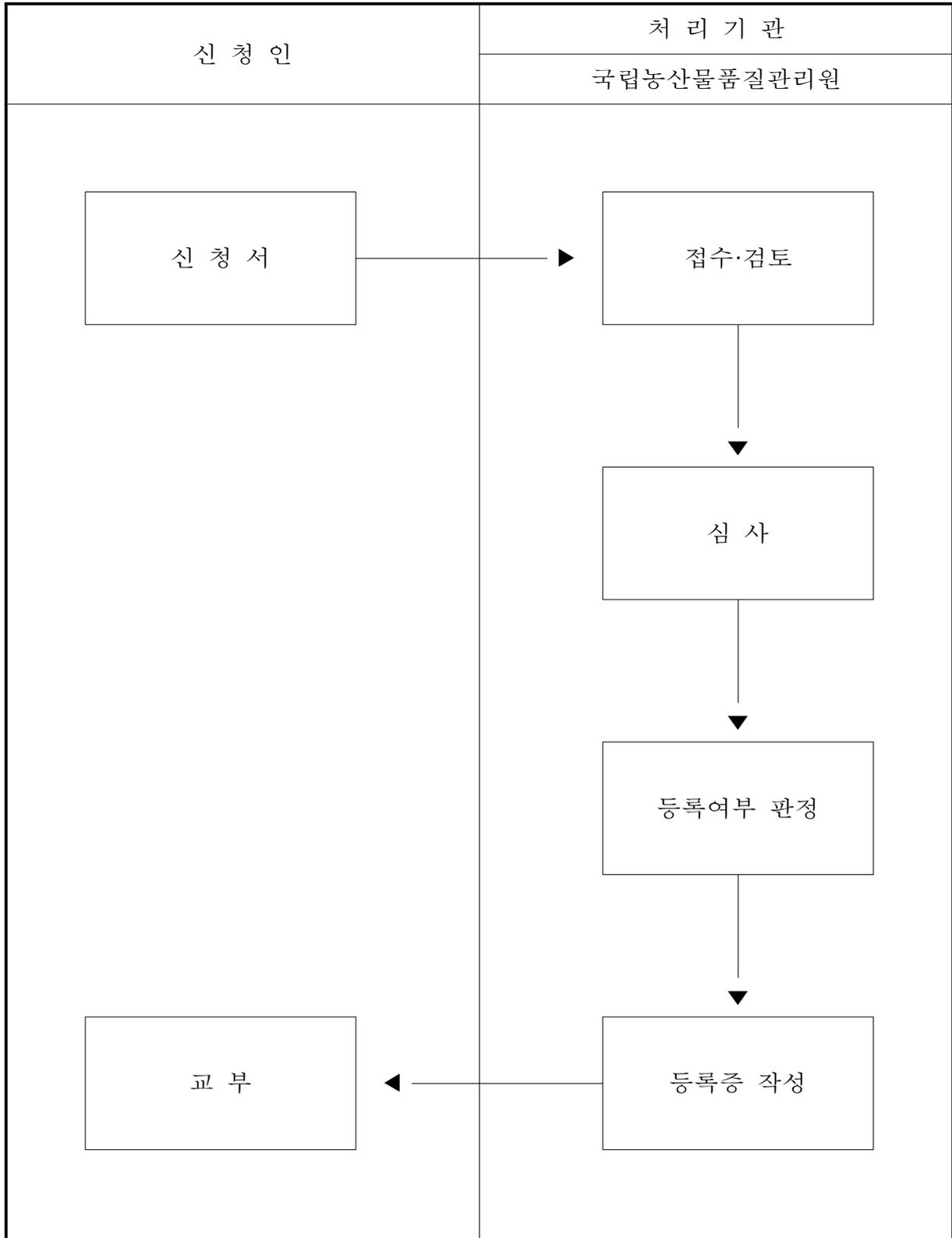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1. 등록번호 : 제 호
2. 성명(조직명) : (농가수 : 명)
3.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5. 품목명 : 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
6. 유효기간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9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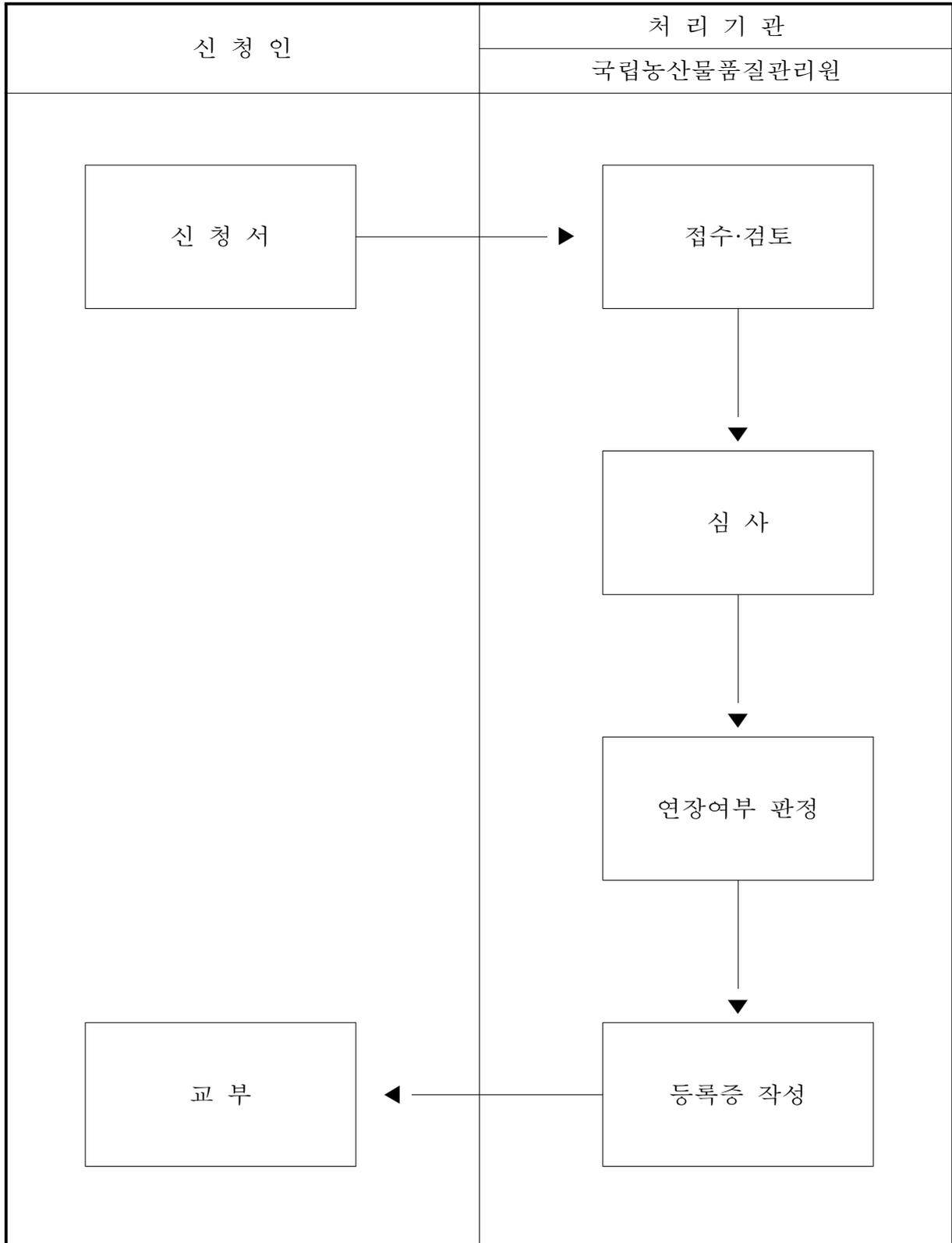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번호	
	주소			
변경내용	기존내용		변경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margin-top: 20px;">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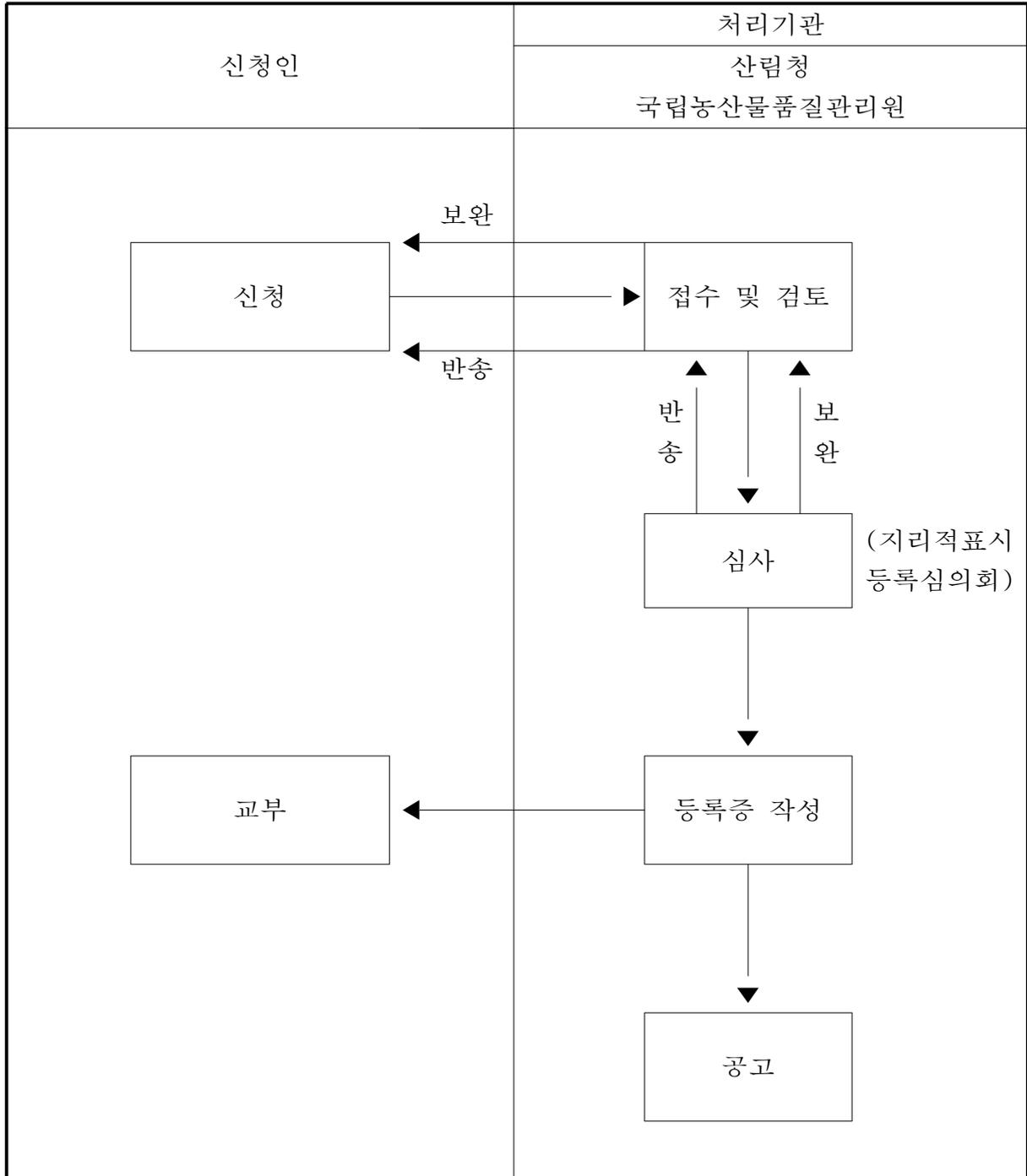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리적표시등록증

1. 등록번호:
2. 등록품목:
3. 등록명칭
 - 한글:
 - 영문:
4. 대상지역:
5. 등 록 자:
6. 주 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증</p> <p>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장 □</p>	<p>사진 (2.5cm×3cm)</p>
--	---------------------------

주) 색상 : 연노랑색

90mm×55mm
(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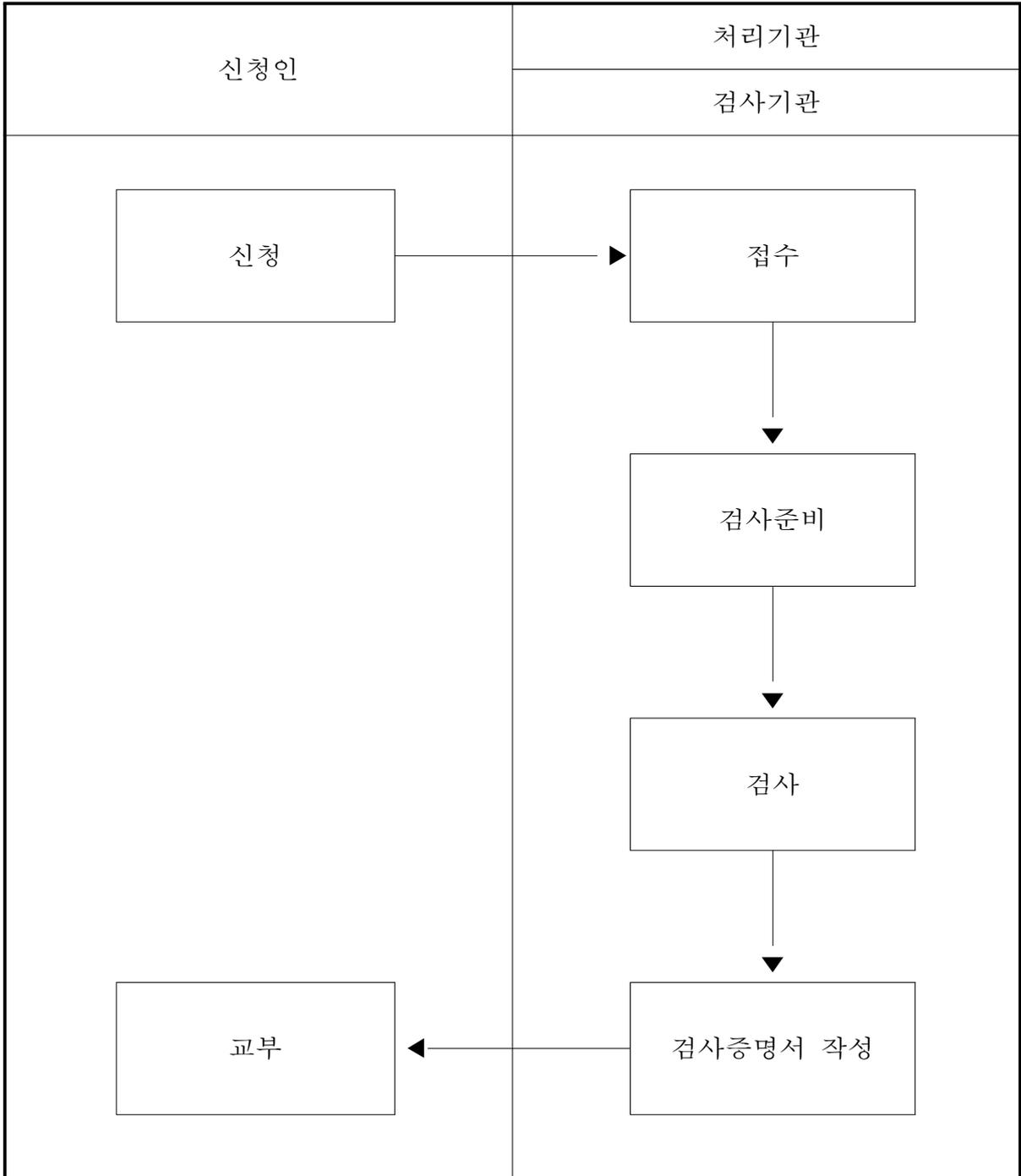
(뒤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판매업자·보관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업장·창고·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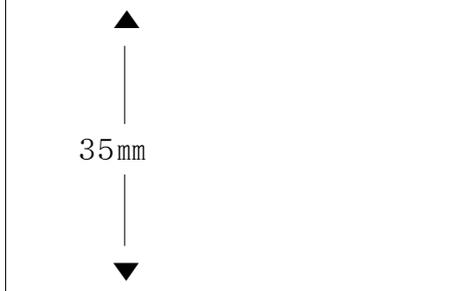
검사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꼬리표

○ (철사 덧붙임)

품목 (품종)	
생산연도	
산지 (원산지)	
실중량	
생산자	성명
	주소
검수일부인	
	

45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주) 꼬리표를 포장재의 입구에 대고 꿰매거나 포장재의 표면에 붙일 경우에는 철사 덧붙임은 생략되며, 첩부용 꼬리표의 지질·크기·문자크기 및 표시사항의 배열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농산물검사원자격관리대장

검사원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임용 연월일	현근무지	자격취득 근거					자격취소 근거					확 인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류	잡사류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류	잡사류	

364mm×257mm

(일반용지(1종) 120g/m²)

- 주) 1. 검사원 번호는 검사기관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2. 소속, 직급, 근무지란은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한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자격취득근거와 날짜를 기재한다.
 4.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7.22>

(앞쪽)

농산물검사원증	
자격구분 검사원번호 소속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진 (2.5×3cm)</div>
<p>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장 □□</p>	

주) 색상 : 연노랑색

90mm×60mm
(일반용지(1종) 120g/m²)

(뒤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2.7.22>

1. 일반농산물

제 호 ()검사증명서							
수검자	성명						
	주소						
구분	포장단위 무게	등급별 수량					비고
						계	
합계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input type="checkbox"/> ○○○장 <input type="checkbox"/> (서명 또는 날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검사원</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2. 수출용농산물

제 호 수출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검자 (Applicant)		생산지 (Area of product)	
		수출지 (Destination)	
L/C 번호 (L/C No.)		품목 (Kind)	
E/L 번호 (E/L No.)		규격 (Specification)	
검사기관 (Inspector authorized)		수량 (Quantity)	
합격증번호 (Certificate No.)		등급 (Inspection result)	
수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have been passed in the export inspection)			
날짜 (Date) (Certificated by)			
○○○장 □ (영문자 표기)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3. 수입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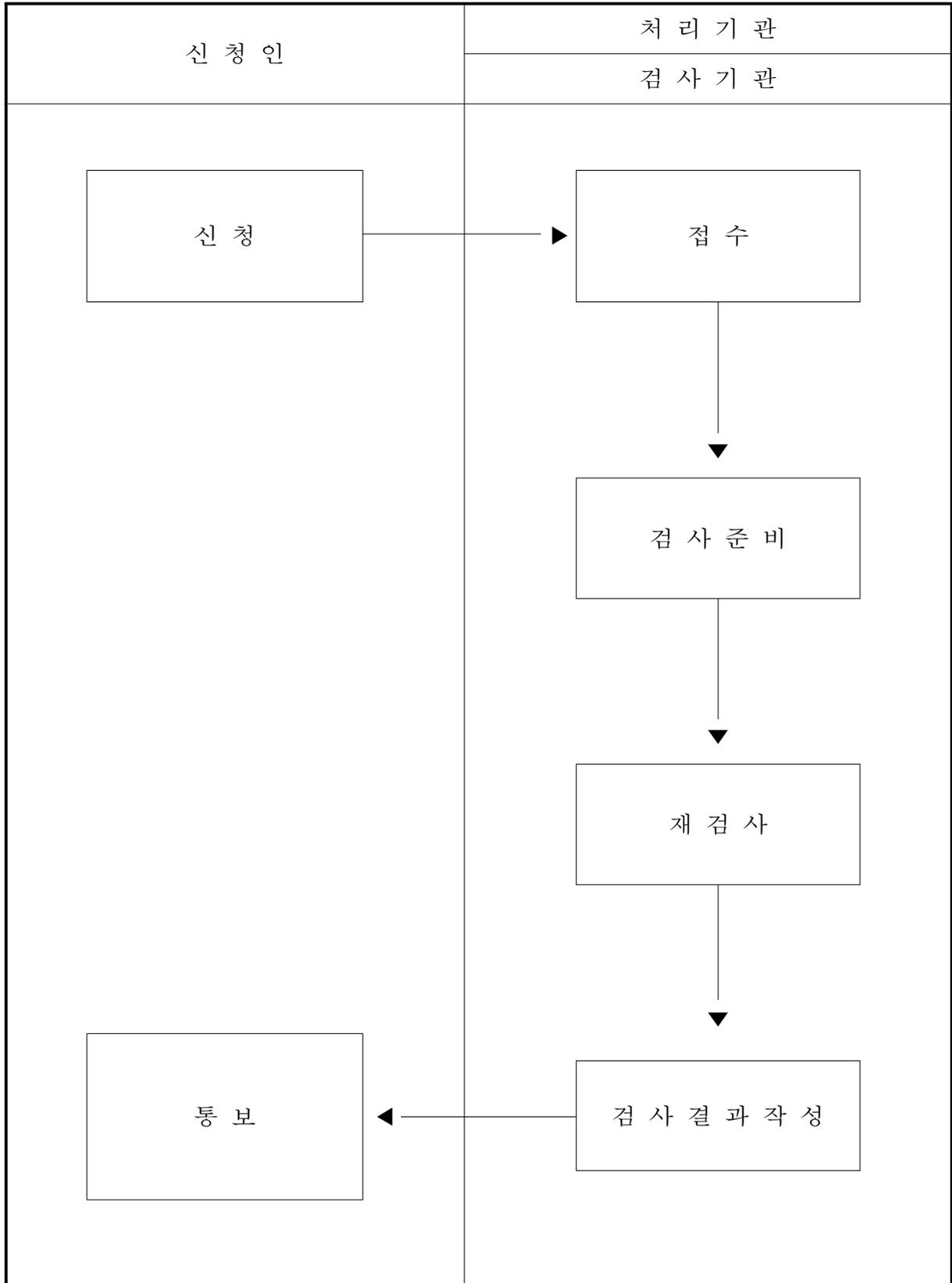
제 호 수입검사증명서				
수검자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품목	원산지	포장자재 및 포장단위무게	신청수량	
적재선(기)명	검사장소	검사일자	검사원	
검사결과내용				
등급별 수량				비고
			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기 관 명)

우○○○-○○○주소/전화(○○○)○○○-○○○○/전송(○○○)○○○-○○○○
 담당부서명 :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
 니다.

이의신청인	성 명			
	주 소			
품 목	신청수량	이의신청 내용		검사결과
		등급	기타	

끝.

○○○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지정검사회망 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	검사 관할지역	검사 장소수	검사 예상량	검사기간	검사 인력	검사시설 및 장비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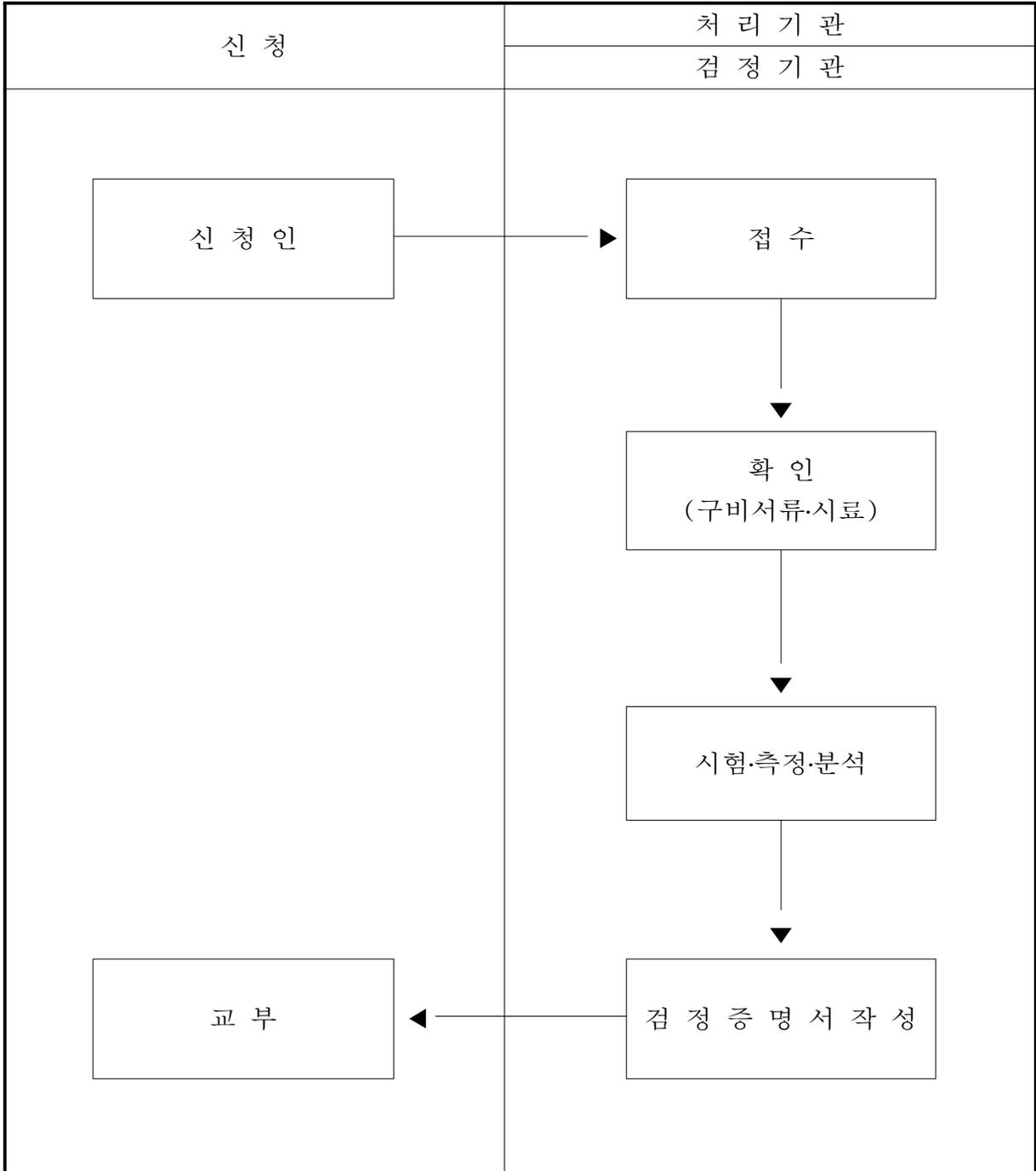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농산물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검정 품 목			
시 료 점 수 및 중 량			
산 지 및 생 산 자			
채 취 연 월 일			
검 정 항 목			
검 정 목 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품목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첨부 : 검정용 시료		수수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검정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2.7.22>

제 호 농산물검정증명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검 정 품 목			
시 료 점 수 및 중 량			
검 정 향 목			
검 정 목 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농산물의 시료에 대한 검정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원본)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수험번호	※			농림부장관 귀하	
② 성 명	(한글)	(한자)	③ 응시지역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주민등록지)			⑥ 연락처	전화번호 :	- -
				이 메 일 :	
⑦ 학 력	() 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⑧ 제1차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 편 철 부 분 ○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부분)				
	⑨ 수험번호	※	⑩ 응시지역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제1차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⑭ 연락처주소 및 소속명칭			⑮ 연락처	전화번호 :
이 메 일 :					
					⑯ 사 진 (3cm×4cm)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수험표					
⑰ 수험번호	※	⑱ 응시지역			
⑲ 성 명		⑳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checkbox"/> 제1차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input type="checkbox"/>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				
					□ 사 진 (3cm×4cm)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제출일자 :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 명②①□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반드시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지역③⑩□ : 응시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④⑫⑳ : 주민등록번호를 공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주소 : ⑤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⑭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번지 까지 기재하고, 근무지 소속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연락처⑥⑮ :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8. 학력⑦ : 최종 학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제1차 시험 면제신청⑧⑬□ : 바로 직전의 자격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사진란⑯□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규격의 동일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 제1차 시험 면제신청 등 기재사항은 최종 합격결정 이후에도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6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2. 필기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는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만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계산기·전자수첩·워드콤·휴대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처리되며, 당해 자격시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자격증 발급시 최종 합격자의 준비물
제1차 시험 : . . .	수험표 및 수험표에 사용한 동일원판 사진으로 3cm×4cm 2매
제2차 시험 : .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1.25>

	<p>국가자격증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p> <p>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p>
(겉표지 뒷면)	(겉표지 앞면)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10px auto; height: 1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cm×4cm</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p>	<p style="text-align: center;">발행번호 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p> <p>자격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p>
(속지 1면)	(속지 2면)

- ①겉표지는 PVC(비닐) 80mm×120mm로 하며 안쪽은 투명한 비닐로 하여 속지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바깥 쪽 양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 ②속지는 1종 보춘용지(120g/m²)로 하며 비닐 안쪽에 끼울 수 있는 크기로 한다.

